

2026학년도 2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안내

1.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이란?

본 대학 입학 이전 또는 재학 중 산업체에서 법적 고용관계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근무기간·직무내용 및 수행결과, 소속학과 교육과정 및 직무역량과의 연계성 등을 심의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만으로 학점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과 및 대학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학점인정 여부와 인정학점이 결정됩니다.

2. 신청대상

★ 본 대학 재학생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 ①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산업체에서 법적 고용관계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일 것
- ② 근무기간, 직무내용 및 수행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 ③ 수행 직무가 소속학과 교육과정 및 직무역량과 연계될 것
- ④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신청 제외대상

휴학생, 학위취득유예자, 편입생, 계약학과 재학생(일학습병행 P-TECH 포함), 외국인 유학생, 산업체 위탁과정 재학생

3.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산업체란?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연구기관
- ③ 「방송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방송사, 신문사 등
- ④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지등록을 팔하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된 산업체
- ⑧ 그 밖에 학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

4. 학점인정 기준

총 근무경력	최대 인정학점	교과목명	이수구분	성적표기
3년 이상 5년 미만	3학점	산업체 근무경력 I (3학점)	전공	P/N
5년 이상 10년 미만	6학점	산업체 근무경력 I (3학점) 산업체 근무경력 II (3학점)	전공	P/N
10년 이상	9학점	산업체 근무경력 I (3학점) 산업체 근무경력 II (3학점) 산업체 근무경력 III (3학점)	전공	P/N

★ 꼭 확인하세요

-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은 학기별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합니다.

- 재학 중 인정받을 수 있는 총 학점은 최대 9학점입니다.

- 총 근무경력에 따른 최대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별 최대 3학점씩 「산업체 근무경력 I·II·III」으로 순차 인정합니다.

5. 인정하지 않는 경력

★ 다음에 해당하는 경력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① 단순 참관·견학·체험활동 등 실제 근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②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 등 근무의 지속성 또는 학습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③ 근무기간, 직무내용 및 수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동일한 근무경력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6. 8. 31.(월) ~ 9. 4.(금) 11:00까지

나. 제출처: 소속학과

다.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학과에 제출

7. 제출서류

가. 학생 작성 및 제출서식

① [붙임1]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서

② [붙임2] 근무경력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에 작성된 내용은 학과 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역할 및 기여도, 해당 경력이 현재 전공 학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필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필요시 추가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연구참여 확인서 또는 활동기간·내용·성과 증빙자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자료

8. 유의사항

-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만으로 학점이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근무기간, 직무내용 및 수행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수행 직무가 소속학과 교육과정 및 직무역량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 학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총 근무경력에 따른 최대 인정학점과 관계없이 학기별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합니다.
- 이미 동일한 근무경력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최종 학점인정 여부 및 인정학점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 인정학점의 이수구분은 전공, 성적은 P/N으로 표기됩니다.
- 인정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나, 해당 학점만으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